

서울고등법원 2024. 9. 25 선고 2024나200962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4. 9. 25 선고 2024나2009622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. 12 선고 2021가합513028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중소기업은행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경 담당변호사 이예린

피고, 피항소인 C 주식회사

피고보조참가인 F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황유리

변론 종결 2024. 8. 21.

판결 선고 2024. 9. 25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. 12. 선고 2021가합513028 판결

주문

-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[청구취지]

1.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에 2020. 6. 19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받게 될 배당금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, 대한민국에 위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의 통지를 하고,
2.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관하여,
가.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에 2020. 6. 19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원고에게 3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[항소취지]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.1)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아래와 같이 일부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서 11면 11행부터 12면 8행까지 부분["2)항" 부분]을 삭제한다.

2. 결론

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.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이양희

판사이은혜

판사이준영

별지

1) 제1심은,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 각하하고,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A, B, D, E에 대한 청구는 이를 모두 인용하였는데, 이에 대해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,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A, B, D, E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·확정되었다.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.